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116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상홍, 이수환, 곽용석

피 고 1. B

2. C

3. D

4.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8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5. 접수 제653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18. 접수 제69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이고, 피고 B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로서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2017. 5.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퇴직할 때까지 F와 각자 원고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2.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H공장 8, 9호기 건축공사를 5,122,260,000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여개의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1,040,397,739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E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대표이사 가수금과 가지급금 차액에 해당하는 224,659,300원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공사대금 280,470,516원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 E의 대표인 피고 B는 원고의 계좌에서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993,517,944원을 출금하여 그 차액 713,047,428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37,706,728원(= 224,659,300원 + 713,047,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로 845,000,000원을 우선 청구한다.

2) 피고 B, E의 주장

피고 B, E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들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소위 부금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실제로 위 피고들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이 부금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사용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 E을 운영하던 중 2017년경 G이 발주하는 H공장 6, 7호기 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 E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으로는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와 의논하여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원고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E이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에게는 공사대금의 5.5% 상당을 소위 '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위 부금계약에 따라 피고 B는 2017. 5.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원고를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와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되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④ 피고 B, E은 G이 발주한 활성탄소공장 증축공사, I 주식회사가 발주한 폐수처리 토목건축공사를 원고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⑤ 피고 B, E은 이 사건 공사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마쳤고, F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317,185,450원을 부금 명목으로 출금해갔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 B, E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위 피고들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한 것은 위 피고들이며, 원고는 명의대여의 대가, 즉 부금을 모두 지급 받아가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와의 부금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위 피고들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1,040,397,739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는 대외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원고의 사전구상권의 행사에 따라, 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마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로 845,000,000원을 우선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대표이사 F와 피고 B가 속칭 부금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금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대여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와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피고 B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건설회사인 피고 E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데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된 점,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이 51억 원을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로서 피고 B와 같은 개인이 위 공사를 실질적인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고 E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것은 피고 E이고, F와 피고 B는 각자 원고와 피고 E를 대표하여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명의대여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B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 또는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C,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사경화, 판사 나소라, 판사 조재혁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241㎡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멘트벽돌조 스타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1.64㎡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경사지

붕 17층 공동주택(아파트)

【도로명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층 공동주택(아파트) 373.40㎡ 2층 공동주택(아파트) 365.24㎡

3층 공동주택(아파트) 365.24㎡ 4층 공동주택(아파트) 365.24㎡

5층 공동주택(아파트) 365.24㎡ 6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7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8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9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0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1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2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3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4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5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6층 공동주택(아파트) 361.04㎡

17층 공동주택(아파트) 180.52㎡

지하 지하대피소 361.04㎡

부속건물

폐.씨.조 경사지붕 1층 경비실 8,880㎡

폐.씨.조 경사지붕 1층 경비실 8,880㎡

폐.씨.조 경사지붕 1층 경비실 8,880㎡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 관사무소, 보육시설

411.006㎡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2층 기계, 전기실 324.480㎡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노인정, 도서실 163.572㎡

파.씨.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재활용품보관소 60.840㎡

파.씨.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2층 지하주차장1. 7179.120㎡

파.씨.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2층 지하주차장2. 4616.560㎡

파.씨.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2층 지하주차장3. 1690.810㎡

(대자권의 복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 3269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4.5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2693.1분의 35.0674 -이상-

